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,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,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공론화에 대한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- 다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- 라.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10월 2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”를 “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”를 “예방·해결하기”로, “마련함”을 “마련하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공론화”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,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말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공론화·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”을 “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”으로, “심의·자문하기”를 “심의·자문하고, 공론화와 공공갈등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”로, 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”를 “공론화·갈등관리위원회”로, “둘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공공갈등”을 “공론화 및 공공갈등”으로 한다.

1.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·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

2.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

3. 주민청원,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

제10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1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
3.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

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주민제안)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오산시 주민 15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<u>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</u> 위한 제도적 절차를 <u>마련함</u>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예방·해결하기</u> ----- - <u>마련하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공론화”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,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말한다.</u></p>
<p>제9조(<u>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시장은 <u>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자문하기</u> 위하여 오산시 <u>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</u>(이</p>	<p>제9조(<u>공론화·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----- <u>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</u> ----- ----- <u>심의·자문하고, 공론화와 공공갈등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</u></p>

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 및 부서장, 갈등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운영하기 --- 공론화·갈등관리 위원회----- 둔다.

1.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·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

2.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

3. 주민청원,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

4. ~ 9. (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10. ----- 공론화 및 공공갈등-----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----- 18명 -----

②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

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, 오산시의회 의원,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~ ⑦ (생략)

<신설>

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시가 추천하는 사람
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
3.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

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 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주민제안)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오산시 주민 15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